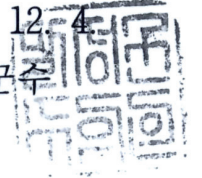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9
----------	------

제출일자 : 2020. 12. 4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2012년 7월 개정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청소년수련 시설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강습료를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에 효율성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사용시간 등) 개정

- 제1항에서 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1에 따르며, 군수는 수련 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요청 등을 감안하여 수련시설 장의 의견을 들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제2항에서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수련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

나. 제11조 제2항(사용료 등) 개정

- 강습료를 별표2에 신설
- 야간시간 18:00 ~ 21:00를 18:00 ~ 22:00로 개정
- 시설 사용료 정비 및 부속설비 사용료 1회 기준 명시

다. 제20조(회계 및 결산) 개정

- 제1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 제3항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청소년기본법」 제15조제2항18조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0. 10. 14. ~ 11. 3.)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이라 하고,
제2조제3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 수련시설” 을 “수련시설” 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군수는 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요청 등을 감안하여 수련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2. 수련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강습료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20조제1항 중 “40일” 을 “30일” 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30일” 을 “90일”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요일별 사용시간

○ 월 ~ 금 : 09:00~22:00

○ 토 : 09:00~17:00

※단, 일요일·법정공휴일은 휴관

【별표2】

1. 시설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헬스장	1인/1월	15,000	30,000	
강당	오전	20,000	40,000	마이크 2개 무료 제공
	오후	25,000	50,000	
	야간	30,000	60,000	
체육관	오전	30,000	60,000	
	오후	50,000	100,000	
	야간	70,000	140,000	
인공암벽장	1인/1월	20,000	30,000	1일 2시간
	1인/1일	3,000	6,000	2시간
야외공연장	오전	35,000	50,000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음악연습실	2시간	10,000	20,000	
강의실	오전	15,000	25,000	
	오후	17,000	27,000	
	야간	20,000	30,000	

2. 강습료

구분	기준	금 액	비 고
평생교육강좌	월/1과목	80,000원 이하	재료비 등 강습에 필요한 실비 별도

3. 부속설비 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조명(무빙라이트)	1회	20,000	30,000	
냉·난방	강당 1회	40,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마이크)	1개당	5,000	10,000	

※위 1회는 제1호(시설사용료)의 각 기준에 따른 기간 내 시설을 사용하면서 부속 설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시간구분

구 분	시 간	비 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토요일은 운영 안함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3.“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0.)	제3조(위치 및 시설) ①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7조(사용시간 등) ①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가운데 하나와 같다. 다만, 수련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2.7.10.) 1. 매월 둘째주 월요일 2. 신정, 설날, 추석	제7조(사용시간 등) ①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군수는 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요청 등을 감안하여 수련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2. 수련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강습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허가시에는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강습료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20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수련시설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③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별표1】

1. 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헬스장	1인/1월	15,000	30,000	
강당	오전	20,000	40,000	마이크2개
	오후	25,000	50,000	
	야간	30,000	60,000	
체육관	오전	30,000	60,000	
	오후	50,000	100,000	
	야간	70,000	140,000	
인공암벽장	1인/1월	20,000	30,000	1일 2시간
	1인/1일	3,000	6,000	2시간
야외공연장	오전	35,000	50,000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음악연습실	2시간	10,000	20,000	
강의실	1회	15,000	25,000	

제20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까지 -----

③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1】

☐ 요일별 사용시간

○ 월 ~ 금 : 09:00~22:00

○ 토 : 09:00~17:00

※ 단, 일요일·법정공휴일은 휴관

【별표2】

1. 시설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헬스장	1인/1월	15,000	30,000	
강당	오전	20,000	40,000	마이크2개 무료제공
	오후	25,000	50,000	
	야간	30,000	60,000	
체육관	오전	30,000	60,000	
	오후	50,000	100,000	
	야간	70,000	140,000	
인공암벽장	1인/1월	20,000	30,000	1일 2시간
	1인/1일	3,000	6,000	2시간
야외공연장	오전	35,000	50,000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음악연습실	2시간	10,000	20,000	
강의실	오전	15,000	25,000	
	오후	17,000	27,000	
	야간	20,000	30,000	

현행	개정안																																																																																																								
신설 2. 부속설비 사용료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기준</th><th colspan="2">금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청소년</th><th>일반</th></tr><tr><td>빔프로젝트</td><td>1회</td><td>15,000</td><td>30,000</td><td></td></tr><tr><td>조명(무빙라이트)</td><td>1회</td><td>20,000</td><td>30,000</td><td></td></tr><tr><td rowspan="2">냉·난방</td><td>강당 1회</td><td>55,000</td><td>80,000</td><td></td></tr><tr><td>강의실 1회</td><td>15,000</td><td>30,000</td><td></td></tr><tr><td>노트북</td><td>1회</td><td>15,000</td><td>30,000</td><td></td></tr><tr><td>음향(추가마이크)</td><td>1회</td><td>5,000</td><td>10,000</td><td>기본 외 개당</td></tr></table> 3. 시간구분 <table><tr><th>구분</th><th>시간</th><th>비고</th></tr><tr><td>오전</td><td>09:00 ~ 12:00</td><td></td></tr><tr><td>오후</td><td>13:00 ~ 17:00</td><td></td></tr><tr><td>야간</td><td>18:00 ~ 21:00</td><td>공휴일은 운영 안함</td></tr></table>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조명(무빙라이트)	1회	20,000	30,000		냉·난방	강당 1회	55,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마이크)	1회	5,000	10,000	기본 외 개당	구분	시간	비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1:00	공휴일은 운영 안함	2. 강습료 <table><tr><th>구분</th><th>기준</th><th>금액</th><th>비고</th></tr><tr><td>평생교육강좌</td><td>월/1과목</td><td>80,000원 이하</td><td>재료비 등 강습에 필요한 설비 별도</td></tr></table> 3. 부속설비 사용료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기준</th><th colspan="2">금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청소년</th><th>일반</th></tr><tr><td>빔프로젝트</td><td>1회</td><td>15,000</td><td>30,000</td><td></td></tr><tr><td>조명(무빙라이트)</td><td>1회</td><td>20,000</td><td>30,000</td><td></td></tr><tr><td rowspan="2">냉·난방</td><td>강당 1회</td><td>40,000</td><td>80,000</td><td></td></tr><tr><td>강의실 1회</td><td>15,000</td><td>30,000</td><td></td></tr><tr><td>노트북</td><td>1회</td><td>15,000</td><td>30,000</td><td></td></tr><tr><td>음향(추가마이크)</td><td>1개 당</td><td>5,000</td><td>10,000</td><td></td></tr></table> ※위 1회는 제1호(시설사용료)의 각 기준에 따른 기간 내 시설을 사용하면서 부속설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시간구분 <table><tr><th>구분</th><th>시간</th><th>비고</th></tr><tr><td>오전</td><td>09:00 ~ 12:00</td><td></td></tr><tr><td>오후</td><td>13:00 ~ 17:00</td><td></td></tr><tr><td>야간</td><td>18:00 ~ 22:00</td><td>토요일은 운영 안함</td></tr></table>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평생교육강좌	월/1과목	80,000원 이하	재료비 등 강습에 필요한 설비 별도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조명(무빙라이트)	1회	20,000	30,000		냉·난방	강당 1회	40,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마이크)	1개 당	5,000	10,000		구분	시간	비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토요일은 운영 안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조명(무빙라이트)	1회	20,000	30,000																																																																																																						
냉·난방	강당 1회	55,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마이크)	1회	5,000	10,000	기본 외 개당																																																																																																					
구분	시간	비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1:00	공휴일은 운영 안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평생교육강좌	월/1과목	80,000원 이하	재료비 등 강습에 필요한 설비 별도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조명(무빙라이트)	1회	20,000	30,000																																																																																																						
냉·난방	강당 1회	40,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마이크)	1개 당	5,000	10,000																																																																																																						
구분	시간	비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토요일은 운영 안함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